

2023년 미국 감독·작가·배우조합의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노사합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능은 경이롭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에 위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할리우드에서도 인공지능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감독조합, 작가조합, 배우조합이 단체교섭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제한하거나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해 노동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문제는 OTT 환경에 따른 노동조건 변화와 함께 이번 교섭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특히 작가조합과 배우조합은 63년 만에 동반 파업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오랜 투쟁 끝에 이들의 교섭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인공지능으로부터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을 여러 형태로 단체협약에 포함하기로 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감독조합, 작가조합, 배우조합의 단체교섭 결과 중 인공지능 관련 문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 합의사항을 반영해 갱신한 새로운 단체협약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합이 공개한 합의각서(단체협약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사항을 정리한 문서) 또는 합의내용을 요약한 공지문 등의 자료를 발췌하였습니다. 최종적인 협약 내용은 다소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발제: 김하늬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차장)

번역: 정보인권연구소 (초벌번역은 기계번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 인공지능 관련 감독조합(DGA)의 합의 (합의각서 발체)

[관련 공지](#)

I. 합의각서 전문과 구성

**MEMORANDUM OF AGREEMENT FOR
DIRECTORS GUILD OF AMERICA BASIC AGREEMENT OF 2023
AND FREELANCE LIVE AND TAPE TELEVISION AGREEMENT OF 2023
(June 6, 2023)**

**2023년 미국감독조합 기본협약과 2023년 방송프리랜서협약에 관한 합의각서
(2023년 6월 6일)**

This Memorandum of Agreement is entered into between the Directors Guild of America, Inc. (“DGA”) and the Alliance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Producers, Inc. (“AMPTP”), on behalf of the Employers which authorized the AMPTP to bargain on their behalf, which Employers are listed on Attachments #1 (Basic Agreement) and #2 (FLTТА) hereto.

본 합의각서는 미국감독조합(Directors Guild of America, “DGA”)과 사용자들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영화·TV제작자연합(Alliance of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Producers, “AMPTP”) 사이에 체결되며, 사용자 목록은 첨부자료 #1(기본협약)과 #2(FLTТА)에 있다.

The Directors Guild of America Basic Agreement of 2020 is referred to herein as “the 2020 BA” and the Directors Guild of America Freelance Live and Tape Television Agreement of 2020 is referred to herein as “the 2020 FLTТА.” The terms of the 2020 BA (including all sideletters) shall be incorporated in the Directors Guild of America Basic Agreement of 2023, except as provided below and subject to conforming changes. The terms of the 2020 FLTТА (including all sideletters) shall be incorporated in the Directors Guild of America Freelance Live and Tape Television Agreement of 2023, except as provided below and subject to conforming changes. The terms of this Memorandum of Agreement shall prevail over any inconsistent provision in the 2020 BA or 2020 FLTТА. The language in this Memorandum is not in contract language, except when so designated or when the context clearly indicates otherwise.

2020년 미국감독조합 기본협약은 본 문서에서 "2020BA"으로 지칭하고 2020년 미국감독조합 방송프리랜서협약은 "2020FLTТА"로 지칭한다. 2020 BA(모든 별도약정서 포함)의 규정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변경해야 하는 사항 외에는 그대로 2023년 미국감독조합 기본협약에 통합되어야 한다. 2020 FLTТА(모든 별도약정서 포함)의 규정은 아래에 명시된 대로 변경해야 하는 사항 외에는 2023년 미국감독조합 방송프리랜서협약에

통합되어야 한다. 본 합의각서와 2020BA 또는 2020FLTTA의 조항이 충돌하는 경우 본 합의각서의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본 각서의 용어는 명시적으로 지정되거나 문맥상 명백하게 달리 표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용어로 되어있지 않다.

The provisions herein shall be effective as of July 1, 2023, unless a contrary date is specified, in which case such provision shall be effective as of the date so specified.

이 문서의 조항들은 달리 정한 날이 없는 한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날짜가 특정되어있는 조항은 그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참고 : 합의각서의 목차

1. 유효기간
2. 보수 (최저급여와 재상영료)
3. 연금과 건강보험
4. 유급육아휴직기금
5. 고예산 SVOD(구독형 VOD) 재상영료
6. 재상영료 통지
7. 고예산 AVOD(광고 기반 VOD) 프로그램 (매체 종류별 '고예산'으로 정의되는 범위)
8. 휴일
9. 고예산 SVOD 장편의 최소 시간
10. 가벼운 제작 전 서비스
11. 유급휴무일
12. 추가 촬영을 위한 대체 감독의 준비일
13. 1시간짜리 유료 TV 시리즈 및 36~65분짜리 1단계 고예산 SVOD 시리즈의 추가 촬영일
14. 에피소드 제작자 겸 감독
15. 제작 이후
16. 전자 전송
17. 캐스팅
18. 에피소드 복제
19. 컨설팅 감독
20. 연장근로수당
21. 비드라마 SVOD 프로그램
22. FLTTA의 적용을 받는 프로그램
23. 다양성
24. 감독 안전훈련
25. UPM, 조감독, 공동연출, 무대관리자에 대한 안전훈련
26. 안전관리자/위험평가
27. 실탄
28. 지속가능성
29. 생성형 인공지능
30. 네트워크방송사 용 프로그램의 TV 프로모션 실행
31. 시사회 제한
32. 감독의 개시일 유연성
33. 감독을 위한 시리즈 또는 연재물 사이의 간격

- 34. 날씨에 대한 허가 및 취소 연락
- 35. 자격 요건 면제
- 36. 3개 조합 회계감사 프로그램
- 37. 별도약정서 답장: 가상 MVPD
- 38. 뉴미디어용 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약정서와 뉴미디어를 통해 전송되는 영화에 관한 별도약정서 하의 조사권
- 39. 법적·행정적 사항들
- 40. 일몰 조항

II. 합의각서 중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내용

29.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U-15)

29. 생성형 인공지능

Add a Sideletter to the Basic Agreement and FLTTA to provide as follows:

기본협약 및 *FLTTA*에 다음과 같이 별도약정서를 추가한다.

**“SIDELETTER NO. __
“As of July 1, 2023**

__번 별도약정서
2023년 7월 1일 발효

[Address block omitted]

주소 부분 생략

“R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답장 : 생성형 인공지능

“Dear Carol:

친애하는 캐롤 (*사용자단체인 **AMPTP**의 대표 /역주)

“During the negotiations for the 2023 Basic Agreement and 2023 Freelance Live and Tape Television Agreement (‘FLTTA’), the parties discussed the us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GAI’) in the production of motion pictures. The parties acknowledged that definitions of GAI may vary, but agreed that the term generally refers to a subse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learns patterns from data and produces content based on those patterns (e.g. ChatGPT4, MidJourney, Dall-E2). It does not include ‘traditional AI’ technologies programmed to perform specific functions, such as those already used during all stages of motion picture production (e.g., CGI and VFX).

2023년 기본협약과 2023년 프리랜서 생방송 및 녹화방송 협약(‘FLTTA’) 협상에서 양측은 영화 제작에 생성형 인공 지능(‘GAI’)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GAI의 정의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했지만,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고 해당 패턴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의 하위 집합(예: ChatGPT4, MidJourney, Dall-E2)을 의미한다는 데 동의했다. 여기에는 영화 제작의 모든 단계에서 이미 사용되는 것(예: CGI 및 VFX)과 같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전통적인 AI’ 기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The Employers re-affirm their respect for the creative rights set forth in the DGA BA, including those described in Paragraphs 7-101 and 7-208. Further, an Employer’s decision to utilize GAI in connection with creative elements will be subject to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consistent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Basic Agreement. To the extent an employee uses GAI, the parties confirm that the employee will be required to adhere to the Employer’s policies (e.g., policies related to ethics, privacy, security, copyrightability or othe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any event, the Employer retains the right to require that an employee obtain consent before using GAI and the right to reject the use of GAI that could adversely affect the copyrightability or exploitation of the work. The Employers agree that the duties customarily assigned to DGA-represented employees as referenced in, among other provisions, Section 1-300 and Article 7 of the Basic Agreement and Article 2 of the FLTTA, must be assigned to a person covered by the Basic Agreement or FLTTA, as applicable, and the Employers acknowledge that GAI does not constitute a person.

사용자들은 제7-101항 및 제7-208항에 기술된 것을 포함하여 DGA BA에 규정된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나아가, 창작 요소와 관련하여 GAI 활용에 대한 사용자의 결정은 기본협약의 조건에 따라 노사가 협의해야 한다. 노동자가 GAI를 사용하는 한에서는 피고용인은 사용자의 정책(예: 윤리, 프라이버시, 보안,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어떤 경우에도 사용자는 노동자가 GAI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요구할 권리와 저작권 또는 저작물 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GAI 사용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사용자는 협약의 규정들 특히 기본협약 제1-300절 및 제7조, 그리고 FLTTA 제2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DGA 소속 노동자들에게 관행적으로 할당되어온 의무가 기본협약 및 FLTTA를 적용받는 사람에게 할당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며 GAI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

“Given the potential impact on the motion picture industry and DGA-represented employees the Employers agree to meet regularly with the DGA during the term of the 2023 DGA BA as follows: (1) to discuss appropriate remuneration, if any, with respect to material directed by DGA-covered employees that is used to train a GAI system for the purpose of creating new motion picture content; (2) on a semi-annual basis, to discuss the current and intended uses of GAI in motion picture production with at least one senior executive from each AMPTP company involved in the development and/or use of GAI in production in attendance; and (3) in a company-by-company basis semi-annually at the request of the DGA and subject to appropriate confidentiality agreements to discuss and review information related to each company’s use and intended use of GAI in motion picture production.

영화 산업과 DGA 소속 노동자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 사용자는 2023 DGA BA 유효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DGA와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합의한다. (1) DGA 소속 노동자가 연출한 결과물이 새로운 영화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GAI 시스템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논의한다. (2) 반기별로 GAI를 개발하거나 제작에 사용하는 AMPTP의 각 회원사의 임원 1명 이상이 참석해 현행의 또는 계획된 GAI 사용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3) DGA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별 회사 단위로 반기별로 적절한 기밀 유지 협약에 따라 각 회사의 현재 또는 예정된 GAI 사용에 관련된 정보를 검토하고 논의한다.

“The parties recognize that this Sideletter is being negotiated at a time when the use of GAI is in the process of exploration, experimentation, and innovation. Therefore, this Sideletter expires on June 30, 2026, unless the parties mutually agree to an extension.

양측은 이 별도약정서가 GAI의 활용이 탐색, 실험, 혁신의 과정에 있을 때 협상이 이루어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별도약정서는 양측이 연장에 상호 동의하지 않는 한 2026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Signature blocks omitted]”

서명 생략

* 참고 : 합의각서에 언급된 기본협약 및 방송프리랜서협약의 조항들

(1) 기본협약 제1-300절 (노동자의 정의)

감독, 단위 제작 관리자(UPM), 제1조감독, 제2조감독, 공동연출이 담당하는 업무를 각각 정의하고 사용자가 그 업무를 일방적으로 다른 개인·기업·법인에게 할당하지 않도록 규정함

(2) 기본협약 제7조 (감독의 최저 노동조건 – 준비, 제작, 그리고 제작 이후)
: 7-101과 7-208을 포함하여

ARTICLE 7
Directors' Minimum Conditions - Preparation,
Production and Post-Production

7조 감독의 최저 노동조건 – 준비, 제작, 그리고 후작업

Section 7-100 PREAMBLE

제7-100절 전문

7-101 The Director's professional function is unique, and requires his or her participation in all creative phases of the film-making proces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ll creative aspects of sound and picture.

The Director works directly with all of the elements which constitute the variegated texture of a unit of film entertainment or information.

The Director's function is to contribute to all of the creative elements of a film and to participate in molding and integrating them into one cohesive dramatic and aesthetic whole.

No one may direct, as the term direct is generally known in the motion picture industry, except the Director assigned to the picture.

The follow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7 are therefore agreed upon:

7-101 감독의 전문적인 역할은 고유하고, 소리와 화면의 모든 창의적인 면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영화 제작 과정의 모든 창작 단계에 참여해야 한다.

감독은 영화 오락이나 정보 단위의 다양한 질감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직접 다룬다.

감독의 기능은 영화의 모든 창작 활동에 기여하고 그것을 조형해 하나의 응집력 있는 극적이고 미학적인 전체로 통합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다.

연출이라는 용어가 영화 산업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영화에 배정된 감독 외에는 누구도 연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7조의 다음 규정들에 합의한다.

Section 7-200 DISCLOSURE AND CONSULTATION WITH RESPECT TO COMMITMENTS

7-200 절 약속에 대한 공개와 협의

7-201 Disclosure Before Assignment 선임 전 정보공개

7-202 Consultation After Assignment 선임 후 협의

7-203 Consultation Regarding UPM 단위제작관리자와 관련된 협의

7-204 Selection of First Assistant Director 제1 조감독 선택

7-205 Second Unit Director 제2단위(B팀)감독

7-206 Individual With Final Cutting Authority 최종 컷팅 권한을 갖는 사람

7-207 Production Executives 제작책임자

7-208 One Director To A Film

There will be only one Director assigned to direct a motion picture at any given time.

However, such limitations shall not be construed as precluding assignment of bona fide teams or of more than one (1) Director to direct pick-ups, added scenes or different segments of a multi-storied or multilingual motion picture (e.g., "Tales of Manhattan," "Love Boat" and "Tora-Tora-Tora") or different segments of a multi-part closed-end television series (e.g., "Roots") or the assignment of more than one Director when required by foreign laws, regulations or subsidies, or assignment of a Second Unit Director or any specially skilled Director (e.g., underwater work or aerial work) to work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Director or a similar customary practice not inconsistent with the general intent of this Paragraph 7-208.

The Directors' Council of the Guild shall not unreasonably withhold its consent to a waiver of the above provisions when two (2) Directors apply for the same based on professional necessity.

At the Employer's request, the Guild agrees to the following exception to this Paragraph 7-208. This exception shall be effective from July 1, 2008 to January 1, 2010 and thereafter unless either the Guild or the AMPTP terminates this exception after giving thirty (30) days written notice.

On an episodic television motion picture which is thirty (30) to sixty (60) minutes in length, the Employer may assign another Director to function as a consultant (herein called "Consulting Director"), subject to the following:

(a) the Director has not previously directed a motion picture under this or any preceding BA;

(b) the Consulting Director has been employed no more than two (2) times under this exception;

(c) all the Employer's instructions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ion must be communicated to the Director;

(d) the Consulting Director may only counsel and advise the Director, and may not instruct or give suggestions to the actors or crew; and

(e) the Consulting Director shall be paid not less than the applicable minimum but is not entitled to any additional compensation pursuant to Articles 11, 18 and 20 and is not entitled to credit under Article 8 or any creative rights under Article 7.

The Consulting Director may not replace the Director, subject to the emergency provision in Paragraph 7-1401.

The Employer shall state on the Director's deal memorandum submitted pursuant to Paragraph 4-108 that a Consulting Director has been assigned pursuant to this exception. The Employer shall also state on the Consulting Director's deal memorandum that he or she is assigned as a Consulting Director.

7-208 작품 하나에 감독 한 명

어떤 경우에도 한 작품을 연출하는 감독은 한 명만 배정된다.

그러나 이런 제한이 여러 스토리 또는 다국어로 구성된 영상(예: **Tales of Manhattan, Love Boat, Tora-Tora-Tora**) 픽업이나 추가 장면 또는 서로 다른 부분을 연출하거나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TV 시리즈(예: **Roots**)의 서로 다른 부분들을 연출하기 위해 진성 팀이나 복수의 감독을 두는 것, 외국의 법률, 규제 또는 보조금 지급 요건에 따라 복수의 감독을 지정하는 것, 감독의 지휘 하에서 작업하는 B팀 감독이나 전문영역 감독(예: 수중 작업 또는 공중 작업)을 배정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하게 이 항(7-208)의 일반적 의도와 일치하지 않는 관행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두 명의 감독이 전문적 필요에 따라 위 규정의 면제를 신청할 때 조합의 감독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그에 대한 동의를 유보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합은 다음과 같이 7-208항의 예외에 동의한다. 이 감독조합과 **AMPTP** 중 어느 일방이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 종료하지 않는 한 2008년 7월 1일부터 201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30~60분 길이의 텔레비전 영상물에 대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자문 역할을 하는 다른 감독(이하 "컨설팅감독")을 임명할 수 있다.

(a) 감독이 이전에 현행 또는 과거의 **BA**를 적용받는 영상 연출을 해본 적이 없을 것

(b) 이 예외에 따라 컨설팅감독을 고용한 전력이 2회 이하일 것

(c) 제작과 관련된 사용자의 모든 지시사항이 감독에게 전달될 것

(d) 컨설팅감독은 감독에게 자문 또는 조언만 할 수 있고 배우나 동료들에게 지시나 제안을 할 수 없음

(e) 컨설팅 디렉터는 해당 최저 금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되, 제11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추가 보상을 받을 권리, 제8조에 따라 크레딧에 이름을 올릴 권리, 제7조에 따른 어떠한 창작자의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다.

컨설팅감독은 7-1401항의 긴급 조항에 따라 감독을 대체할 수 없다.

사용자는 4-108항에 따라 교부한 감독 계약서에 이 예외에 따라 컨설팅감독이 지정되었음을 명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또한 컨설팅감독과의 계약서에 자신이 컨설팅감독으로 선임된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7-209 Consultation Regarding Editor 편집자에 관한 협의

7-300 preparation 준비

7-400 Production 제작

7-500 Editing and Post-Production 편집과 제작 이후

7-600 Copy of Motion Picture 영상 복제

7-700 Previews 시사

.....

7-1500 General Provisions 일반 규정

(3) FLTTA(방송프리랜서협약) 제2조

감독, 조감독, 무대매니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해 정의하고, 이 조항이 TV산업에서 또는 개별 회사 내의 협의를 통해 관행적으로 수행해왔던 직무와 권한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

■ 인공지능 관련 작가조합(WGA) 합의 내용(합의각서 발체)

관련 공지

MEMORANDUM OF AGREEMENT FOR THE 2023 WGA THEATRICAL AND TELEVISION BASIC AGREEMENT

2023년 작가조합 극장 및 TV 기본협약에 관한 합의각서

ARTICLE 72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제72조 생성형 인공지능

A.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definitions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GAI') vary, but agree that the term generally refers to a subse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learns patterns from data and produces content, including written material, based on those patterns, and may employ algorithmic methods (e.g., ChatGPT, Llama, MidJourney, Dall-E). It does not include 'traditional AI' technologies such as those used in CGI and VFX and those programmed to perform operational and analytical functions.

A. 양측은 생성형 인공지능('GAI')의 정의가 다양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고 그러한 패턴을 기반으로 어문 자료를 포함한 콘텐츠를 생성하며 알고리즘 방법론(예: ChatGPT, Llama, MidJourney, Dall-E)을 사용하는 인공지능의 부분 집합을 의미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여기에는 CGI나 VFX에 사용되거나 운영 및 분석 기능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된 것과 같은 '전통적인 AI' 기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B. The Companies agree that because neither traditional AI nor GAI is a person, neither is a 'writer' or 'professional writer' as defined in Articles 1.B.1.a., 1.B.1.b., 1.C.1.a. and 1.C.1.b. of this MBA, and, therefore, written material produced by traditional AI or GAI shall not be considered literary material under this or any prior MBA.

B. 양측은 전통적인 AI와 GAI가 모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본 기본협약 합의각서(MBA)의 조항 1.B.1.a, 1.B.1.b, 1.C.1.a 및 1.C.1.b에 정의된 '작가' 또는 '전문 작가'가 아니며, 따라서 전통적인 AI나 GAI가 생산한 서면 자료는 본 합의각서 또는 이전의 어떤 합의각서에 의해서도 어문저작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C. Should a Company furnish a writer with written material produced by GAI which has not been previously published or exploited, and instruct the writer to use the GAI-produced material as the basis for writing literary material:

1. The Company shall disclose to that writer that the written material was produced by GAI.
2. The GAI-produced written material shall not be considered assigned material for purposes of determining the writer's compensation.
3. The GAI-produced written material shall not be considered source material for purposes of determining writing credit.
4. The GAI-produced written material shall not be the basis for disqualifying a writer from eligibility for separated rights.

This subparagraph C. also applies when a writer, with the consent of the Company, uses GAI in the course of preparing literary material. Company agrees that it will not publish or exploit GAI written material for the purposes of evading this provision.

When a writer, with the consent of the Company, uses GAI in the course of preparing written material or incorporates GAI-produced material in written material, such written material shall be considered literary material and not material 'produced' by GAI.

C. 회사가 작가에게 이전에 출판되거나 활용되지 않은 자료로서 GAI가 생산한 서면 자료를 제공하고 어문저작물 집필의 기초로 GAI가 생산한 자료를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1. 회사는 서면 자료가 GAI에 의해 생산되었음을 해당 작가에게 알려야 한다.
2. GAI가 생산한 서면 자료는 작가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된 자료로 간주되지 않는다.
3. GAI가 생산한 서면 자료는 저작자 크레딧을 결정하는 목적의 출처 자료로 간주되지 않는다.
4. GAI가 생산한 서면 자료는 별도 권리(**Separated Rights**, 작가조합의 기본협약에 따라 원본 저작물의 작가에게 제공하는 권리로, 저작권에서 파생되는 몇 가지 권리를 묶어 일컫는 용어 / 역주 - WGA 홈페이지 중 "**Separated Rights**" 설명 내용 참조)에 대한 작가의 자격을 박탈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이 C항은 작가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어문저작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GAI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회사는 이 조문을 회피할 목적으로 GAI가 작성한 자료를 공표하거나 악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작가가 회사의 동의를 얻어 어문저작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GAI를 사용하거나 GAI가 생산한 자료를 자신이 쓴 저작물에 포함시키는 경우, 그러한 저작물은 GAI가 '생산한' 자료가 아닌 어문저작물로 간주된다.

The following examples illustrate application of this subparagraph C.:

EXAMPLE 1:

Company furnishes Writer A with written material substantially in the form of a screenplay produced by GAI which has not been previously published or exploited and assigns no other materials. Company instructs Writer A to rewrite the GAI-produced written material.

Company must pay Writer A no less than the minimum compensation for a screenplay under Article 13.A.1.a.(2), as well as no less than the amount specified in Article 13.A.1.a.(9), 'Additional Compensation Screenplay – No Assigned Material.' The GAI-produced written material is not considered source material when determining writing credit to Writer A and will not disqualify Writer A from eligibility for separated rights.

Company later assigns the screenplay rewritten by Writer A to Writer B and instructs Writer B to rewrite the screenplay rewritten by Writer A. Company must pay Writer B no less than the minimum compensation for a rewrite under Article 13.A.1.a.(3). Writer A's rewritten screenplay must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writing credit to Writer B and eligibility for separated rights.

다음은 이 C항의 적용을 설명하는 예시이다.

예시 1:

회사가 A 작가에게 이전에 출판되거나 활용된 바 없는, GAI가 제작한 시나리오 형태의 어문 자료를 제공하고 다른 자료는 부여하지 않는다. 회사가 A 작가에게 GAI가 작성한 어문 자료를 각색하도록 지시한다.

이 경우 회사는 A 작가에게 13.A.1.a.(2) 조항에 따른 각본에 대한 최저 보수와 13.A.1.a.(9) 조항의 '추가 보수 각본 - 부여된 자료가 없는 경우'에 명시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GAI가 작성한 어문 자료는 A 작가에 대한 저작자 크레딧을 결정할 때 원작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별도 권리에 대한 A 작가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회사가 나중에 A 작가가 각색한 시나리오를 B 작가에게 주고 이를 다시 각색하도록 지시한다. 이 경우 회사는 B에게 13.A.1.a.(3) 조항에 따라 각색에 대한 최소 보수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작가 B에 대한 저작자 크레딧 및 별도 권리에 대한 자격을 결정할 때는 A 작가가 각색한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한다.

EXAMPLE 2:

Company furnishes Writer A with written material substantially in the form of a story produced by GAI which has not been previously published or exploited and assigns no other materials. Company instructs Writer A to write a teleplay based on the GAI-produced written material. Company must pay Writer A no less than the minimum compensation for a story and teleplay. The GAI-produced story is not considered source material when determining writing credit to Writer A and will not disqualify Writer A from eligibility for separated rights.

Company later assigns the teleplay written by Writer A to Writer B and instructs Writer B to rewrite the teleplay written by Writer A. Company must pay Writer B no less than the minimum compensation for a rewrite. Writer A's teleplay must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writing credit to Writer B and eligibility for separated rights.

예시 2:

회사가 A 작가에게 이전에 출판되거나 활용되지 않은 GAI가 생산한 스토리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어문 자료를 제공하고 다른 자료는 부여하지 않는다. 회사가 A 작가에게 GAI가 제작한 어문 자료를 바탕으로 TV 프로그램의 대본을 작성하도록 지시한다. 이 경우 회사는 A 작가에게 스토리 및 대본에 대한 최저 보수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GAI가 만든 스토리는 A 작가에 대한 저작자 크레딧을 결정할 때 원작물로 간주되지 않으며 A 작가의 별도 권리에 대한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회사가 나중에 A 작가가 작성한 대본을 B 작가에게 주고 B에게 작가 A가 작성한 대본을 각색하도록 지시한다. 회사는 B 작가에게 각색에 대한 최저 보수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B 작가의 저작자 크레딧과 별도 권리에 대한 자격을 결정할 때 A 작가의 대본을 고려해야 한다.

D. A writer will be required to adhere to the Company's policies regarding the use of GAI (e.g., policies related to ethics, privacy, security, copyrightability or othe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y purchase of literary material from a professional writer is also subject to such policies. A writer must obtain the Company's consent before using GAI. The Company retains the right to reject the use of GAI, including the right to reject a use of GAI that could adversely affect the copyrightability or exploitation of the work.

D. 작가는 GAI 사용에 관한 회사의 정책(예: 윤리, 개인정보 보호, 보안, 저작권성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전문작가로부터 어문저작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이 정책이 적용된다. 작가는 GAI를 사용하기 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사는 GAI 사용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여기에는 저작물의 저작권성 또는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GAI 사용에 대한 거부권도 포함된다.

E. A Company may not require, as a condition of employment, that a writer use a GAI program which generates written material that would otherwise be 'literary material' (as defined in Article 1.A.5.) if written by a writer (as defined in Article 1.B.1.a. and Article 1.C.1.a.) (e.g., a Company may not require a writer to use ChatGPT to write literary material). The preceding sentence does not prohibit a Company from requiring a writer to use a GAI program that does not generate written material, such as a GAI program that detects potential copyright infringement or plagiarism.

E. 회사는 작가에게 고용조건으로서 (1.B.1.a와 1.C.1.a. 조항의 정의에 따른) 작가가 썼다면 (1.A.5. 조항의 정의에 따른) '어문저작물'이 될 수 있는 서면자료를 생성하는 GAI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예: 회사는 작가에게 챗GPT를 사용해

어문저작물을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앞의 문장은 회사가 작가에게 잠재적인 저작권 침해 또는 표절을 감지하는 GAI 프로그램 등 어문저작물을 생성하지 않는 GAI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F.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the legal landscape around the use of GAI is uncertain and rapidly developing and each party is reserving all rights relating thereto unless otherwise expressly addressed in this Article 72. For example, nothing in this Article 72 restricts any writer who has retained reserved rights under Article 16.B., or the WGA on behalf of any such writer, from asserting that the exploitation of their literary material to train, inform, or in any other way develop GAI software or systems, is within such rights and is not otherwise permitted under applicable law.

F. 양측은 GAI 사용과 관련된 법적 환경이 불확실하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각 당사자는 본 제72조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한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유보한다. 예를 들어, 본 제72조의 어떤 조항도 16.B. 조항에 따라 유보된 권리를 갖고 있는 작가나 그 작가를 대리하는 작가조합이 GAI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의 학습, 정보 제공 또는 기타 방법을 이용한 발전을 위해 자신의 어문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그런 권리 내에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달리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G. Each Company agrees to meet with the Guild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t least semi-annually at the request of the Guild and subject to appropriate confidentiality agreements to discuss and review information related to the Company's use and intended use of GAI in motion picture development and production. The foregoing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to waive any right of the Guild under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right to seek information necessary and relevant to the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this Article 72.

G. 각 회사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조합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기밀 유지 약정 하에 반기별 1회 이상 조합과 만나 영화를 발전시키거나 제작할 때 회사의 GAI 사용 및 사용계획과 관련된 정보를 논의하고 검토하는 데 동의한다. 전술한 조항은 본 제72조의 적용 및 집행에 필요하고 관련된 권리를 포함하되 이것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는 조합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인공지능 관련 **배우조합(SAG-AFTRA)** 합의 내용
(합의사항 요약문 발췌)

관련 보도

**Summary of 2023 Tentative Successor Agreement to the 2020
Producer-SAG-AFTRA Codified Basic Agreement ('Codified Basic Agreement')
and 2020 SAG-AFTRA Television Agreement ('Television Agreement')
(hereafter, collectively 'the Agreements')**

2020년 제작사-배우·방송인조합 성문화된 기본협약(‘성문화된 기본협약’)과
2020년 배우·방송인조합 텔레비전협약(‘TV협약’)(이하 ‘협약’으로 통칭)을
갱신하기 위한 **2023년** 잠정합의안 요약문

II. ARTIFICIAL INTELLIGENCE

II. 인공지능

A. Effective Date: The below terms will apply beginning 90 days after the AMPTP receives notice of ratification, except that to the extent practicable, Producers shall endeavor to comply with these provision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the term of this Agreement, i.e., Nov. 9, 2023.

A. 발효일 : 아래 조항은 AMPTP(사용자단체)가 비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부터 적용된다. 단, 제작사는 예외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계약 기간의 첫날, 즉 2023년 11월 9일부터 이러한 조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B. Digital Replication and Alteration of Performers

B. 연기자의 디지털 복제 및 변경

1. Establishes definitions and coverage for creation, use, and alteration of “digital replicas” of performers

a) Creation and use of two types of digital replicas: ‘Employment-Based Digital Replica’ and ‘Independently-Created Digital Replica’

1. 연기자의 "디지털 복제본(Replica, 원작자가 손수 만든 복제본을 말함 /역주)"
제작·사용·변경에 대한 정의 및 적용 대상 설정

a) 두 가지 유형의 디지털 복제본 제작 및 사용: '고용 기반 디지털 복제본'과
'독립 제작 디지털 복제본'

2. Employment-Based Digital Replica: A replica of the voice or likeness of the performer that is created: (i) in connection with employment on a motion picture under this Agreement; (ii) using digital technology; (iii) with the performer's physical participation; and (iv) is for the purpose of portraying the performer in photography or sound track in which the performer did not actually perform.

2. 고용 기반 디지털 복제본: 연기자의 음성 또는 초상의 복제본은 (i) 본 협약을 적용받는 영화를 위한 고용과 관련되어 있고, (ii)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며, (iii) 연기자가 실제로 참여하고, (iv) 연기자가 실제 연기하지 않은 촬영본 또는 사운드트랙에 연기자를 표현할 목적으로 제작되는 것을 말한다.

a) Services for creation of Employment-Based Digital Replica:

(1) 48-hour advance notice prior to services for creation

(2) Consent required

(a) Must be clear and conspicuous

(b) An endorsement or statement in the performer's employment contract that is separately signed or initialed by the performer or in a separate writing that is signed by the performer

(c) Time spent creating replica is work time if on the same day that the performer performs other work for the producer

(3) Compensation for services on a day the performer is not performing other work for the producer:

(a) One (1) day at performer's pro rata daily salary, but not less than day performer minimum

(b) If the work was scheduled on a separate day in order to accommodate performer, one half ($\frac{1}{2}$) of the performer's pro rata daily salary is due for a four (4) hour session. Over four (4) hours, one (1) day at the performer's pro rata daily salary (not less than the day performer minimum)

(c) Consecutive employment does not apply

(d) No additional pay if:

(i) Performer employed under Schedule F

(ii) Work occurs during the performer's guarantee

(iii) Work occurs on a day that Producer is paying a minimum of 1 day's salary for other services, travel allowance, or consecutive employment

a) 고용 기반 디지털 복제본 제작을 위한 노동:

(1) 48시간 전에 사전 통지한다.

(2) 동의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 이루어져야 한다.

(a) 명확하고 명시적이어야 한다.

(b) 연기자 개인의 서명이나 이름 약자(약식 서명)가 포함된 고용계약서나 연기자 별로 서명해 작성한 서면에 배서 또는 진술이 있어야 한다.

(c) 복제본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은 같은 날 연기자가 제작자를 위한 다른 연기를 하는 경우 노동시간에 포함한다.

(3) 연기자가 제작자를 위해 다른 연기를 하지 않는 날의 노동에 대한 보수

(a) 연기자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연기자 최저 일급 이상이어야 한다.

(b) 연기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작업 일정을 잡게 되면, 4시간 이내인 경우 연기자 일할 급여의 절반(1/2)을,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일할 급여를 지급한다(연기자 최저 일급 이상이어야 한다).

(c) 연속 근로인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d)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i) 별표 F(높은 급여 기준이 적용되는 배우 /역주)에 따라 고용된 연기자

(ii) 연기자와 미리 약속된 기간 내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iii) 제작자가 연기자의 다른 용역, 출장비 또는 연속근로에 대하여 최저 일급을 지급하는 날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b) Use of Employment-Based Digital Replica:

(1) In the motion picture for which the performer was employed

(a) Consent required unless the photography or sound track remains substantially as scripted, performed and/or recorded

(b) Must include a reasonably specific description of the intended use

(c) Consent must be clear and conspicuous and may be obtained through an endorsement or statement in the performer's employment contract that is separately signed or initialed by the performer or in a separate writing that is signed by the performer

(d) Consent granted during a performer's lifetime continues after death unless explicitly limited otherwise

(i) If performer is deceased and consent is required, it may be granted by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deceased performer or, if representative cannot be found, by the union

(e) Compensation:

(i) Performer's pro rata daily rate or the minimum rate, whichever is higher, for the number of production days that Producer determines the performer would have been required to work had the performer instead performed those scene(s) in person. Producer must make a good faith effort to estimate the number of production days utilizing objective criteria

(ii) Compensation treated as wages for all purposes

(iii) No compensation required if:

(a) Based on the performer's form of engagement, their compensation would have covered the work had it been performed by the performer

(b) The digital replica is used in a scene in which the performer performed in person

(c) Performer is under Schedule F

(f) Residuals required if digital replica remains in the motion picture in a manner that would have entitled the performer to residuals

(i) Time-and-salary units, 'total applicable minimum' or 'total actual compensation' formula residuals based on the total time worked and/or salary paid, up to caps, for both in-person services and use of the digital replica

(ii) Rateable distribution formula — based on the performer's form of engagement, unless only the digital replica remains. If so, performer is treated as a day performer and assigned one (1) unit.

b) 고용 기반 디지털 복제본 사용:

(1) 해당 연기자가 출연한 영화에서 사용하는 경우

(a) 화면이나 소리가 대본, 연기 및 녹화 상태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동의가 필요하다.

(b) 사용 목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c) 동의는 분명하고 명시적이어야 하며, 연기자 개인의 서명이나 이름의 약자가 포함된 고용계약서나 연기자 별로 서명해 작성한 서면에 배서 또는 진술이 있어야 한다.

(d) 연기자의 생전에 이루어진 동의는 명시적으로 달리 제한하지 않는 한 사망 후에도 효력이 지속된다.

(i) 연기자가 사망하였고 동의가 필요한 경우, 사망한 연기자에 대한 권한을 보유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조합이 동의를 행사할 수 있다.

(e) 보상

(i) 제작자가 판단하기에 해당 장면을 연기자가 직접 연기했다면 해당 연기를 하는 데 걸렸을 제작일수에 대한 일할급여와 일할 계산한 최저급여 중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한다. 제작자는 이때의 제작일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활용하여 신의성실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ii) 보상은 모든 목적에서 임금으로 취급된다.

(iii)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a) 연기자의 계약 형태에 근거하여, 연기자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에 해당 보수가 포함되는 경우

(b) 연기자가 직접 출연한 장면에 디지털 복제본이 사용된 경우

(c) 연기자가 별표 F에 속하는 경우

(f) 연기자가 재상영료를 지급받을 자격을 갖는 형태로 디지털 복제본이 영화에 유지되는 경우 재상영료가 지급되어야 한다.

(i) 사람이 직접 하는 일과 디지털 복제본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에 대해, 총 노동시간 또는 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총 시간을 기초로 한 시간-급여단위, '적용되는 최저급여 총액' 또는 '실제 보수 총액' 공식에 따른 재상영료(최대 한도까지)

(ii) 디지털 복제본만 남아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연기자의 참여 형태를 기준으로 하는 비례 배분 공식. 이 경우 연기자는 일용직 연기자로 간주되어 1일 단위로 지급받는다.

(2) Use Other Than in the Motion Picture for Which the Performer Was Employed

(a) Consent and separate bargaining

(i) Consent must be clear and conspicuous

(ii) Must include a reasonably specific description of the intended use

(iii) Consent at time of use, not initial employment, except that consent for use in another identified project may be obtained at initial employment, provided that:

(a) a reasonably specific description of the intended use is provided for each identified project

(b) performer is also employed in the other identified project(s) or is deceased at the time the other identified project(s) commences production

(c) Consent continues after death unless explicitly limited otherwise

(d) If performer is deceased and consent is required, it may be granted by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deceased performer or, if representative cannot be found, by the union

(b) Compensation:

(i) Day performer rate (including residuals as applicable) is minimum

(ii) Use in a field or medium covered by another SAG-AFTR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subject to bargaining at no less than the minimum wages and residuals in that agreement

(iii) No additional compensation required for use if performer was employed under Schedule F

(2) 연기자가 출연한 영화 외의 사용

(a) 동의 및 별도 교섭

(i) 동의는 분명하고 명시적이어야 한다.

(ii) 사용 목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iii) 최초 고용 시점이 아닌 사용 시점에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확인된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최초 고용 시점에 득할 수 있다.

(a) 확인된 프로젝트 각각의 사용 목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지는 경우

(b) 연기자가 확인된 다른 프로젝트에도 고용되어 있거나 확인된 다른 프로젝트가 제작을 시작할 시점에 사망한 경우

(c) 명시적으로 달리 제한하지 않는 한 동의의 효력은 사망 후에도 지속된다.

(d) 연기자가 사망한 후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한 연기자에 대한 권한을 보유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조합이 동의를 행사할 수 있다.

(b) 보상

(i) 연기자 임금(재상영료 지급 대상인 경우 이를 포함)은 최저급여이다.

(ii) 최저보수 및 재상영료 이상으로 교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배우조합의 다른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현장 또는 매체에서 사용해야 한다.

(iii) 연극자가 별표 F에 따라 고용된 경우 사용에 대한 추가 보상이 필요하지 않다.

3. Independently Created Digital Replica: (i) intended to create, and does create, the clear impression that the asset is a natural performer whose voice and/or likeness is recognizable as the voice and/or likeness of an identifiable natural performer; (ii) performing in the role of a character (and not as the natural performer himself/herself); and (iii) no employment arrangement for the motion picture in which the Independently Created Digital Replica will be used exists with the natural performer in the role being portrayed by the asset.

a) Consent and bargaining required prior to use

b) Consent must be clear and conspicuous

c) Signed by performer in a writing that includes a reasonably specific description of the intended use

d) Continues after death unless explicitly limited otherwise

e) If performer is deceased, may be granted by the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deceased performer or the union if representative cannot be found

f) P&H contributions required

g) Exceptions for uses if they would be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e.g., comment, criticism, scholarship, satire or parody, use in a docudrama, or historical or biographical work, to the extent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3. 독립 제작 디지털 복제본: (i) 애셋(asset,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것이나 능력 또는 아직 소비되지 않은 용역잠재력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영어 발음 그대로 표기함 /역주)이 인간 연기자의 것과 같은 목소리 및/또는 외모를 가진 인간 연기자로 보이도록 하는 의도를 갖고 만들어져 실제로 명백히 그런 인상을 주고, (ii) 인간 연기자 자신이 아닌 캐릭터의 역할을 연기하며, (iii) 독립 제작 디지털 복제본이 사용될 영화에서 애셋이 묘사하는 역할의 인간 연기자와의 고용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 사용 전에 동의 및 교섭이 필요하다.

b) 동의는 분명하고 명시적이어야 한다.

c) 사용 목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된 서면에 연기자가 서명해야 한다.

- d) 명시적으로 달리 제한하지 않는 한 사망 후에도 효력이 지속된다.
- e) 연극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연극자에 대한 권한을 보유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조합이 동의를 행사할 수 있다.
- f) 연금 및 건강보험의 보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
- g)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 /역주)로 보호되는 경우 예외적 사용이 허용된다(예: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되는 범위 내의 논평, 비평, 학술, 풍자 또는 패러디, 다큐드라마 또는 역사적이거나 전기적인 저작물에 사용하는 경우).

4. Digital Alteration

- a) Consent required to digitally alter a performer's performance in photography or sound track previously recorded by the performer
- b) Exception when the photography or sound track of the performer remains substantially as scripted, performed and/or recorded
- c) Consent must be clear and conspicuous and may be obtained through an endorsement or statement in the performer's employment contract that is separately signed or initialed by the performer or in a separate writing that is signed by the performer
- d) Must include a reasonably specific description of the intended alteration
- e) Continues after death unless explicitly limited otherwise
 - (1) If performer is deceased, consent may be obtained from authorized representative or union if representative cannot be found
- f) Exceptions to consent:
 - (1) Post-production alterations, editing, arranging, rearranging, revising or manipulating of photography and/or sound track for purposes of cosmetics, wardrobe, noise reduction, timing or speed, continuity, pitch or tone, clarity, addition of visual/sound effects or filters, standards and practices, ratings, an adjustment in dialogue or narration or other similar purposes
 - (2) Under any circumstance when dubbing or use of a double is permitted under the Codified Basic Agreement or Television Agreement
 - (3) Adjusting lip and/or other facial or body movement and/or the voice of the performer to a foreign language, or for purposes of changes to

dialogue or photography necessary for license or sale to a particular market

g) Claims subject to arbitration

h) Remedies limited to monetary damages

4. 디지털 변경

a) 배우가 이전에 녹화한 촬영본이나 사운드트랙에서 배우의 연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b) 연기자의 촬영본 또는 사운드트랙이 대본, 연기 및 녹화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 동의는 분명하고 명시적이어야 하며, 연기자 개개인의 서명이나 이름의 약자가 포함된 고용계약서나 연기자 별로 서명해 작성한 서면에 배서 또는 진술이 있어야 한다.

d) 변경 목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e) 명시적으로 달리 제한하지 않는 한 사망 후에도 효력이 지속된다.

(1) 배우가 사망한 경우 권한을 보유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조합이 동의를 행사할 수 있다.

f) 동의의 예외:

(1) 화장, 의상, 소음 감소, 시의성 또는 속도, 연속성, 음색이나 어조, 선명도, 시각/음향 효과 또는 필터 추가, 표준 및 관행, 등급, 대화 또는 내레이션의 조정, 기타 유사한 목적을 위한 촬영본 및 사운드 트랙 후작업 과정의 변경, 편집, 배열, 재배포, 수정 또는 조작인 경우

(2) 성문화된 <기본협약 및 텔레비전협약>의 규정에 따라 더빙이나 대역 사용이 허용되는 모든 상황

(3) 출연자의 입술 및 기타 얼굴이나 신체의 움직임, 또는 목소리를 외국어로 조정하거나, 특정 시장에 대한 라이선스 또는 판매에 필요하여 대화 또는 촬영본을 변경하려는 목적인 경우

g)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중재에 회부한다.

h) 구제 조치는 금전적 손해로 제한된다.

5. Does not expand or contract existing rights under CBA or TV Agreement

a) No impact on Section 43 of the General Provisions (nudity)

5. 단체협약 또는 TV협약에 따라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a) 일반규정 제43절(누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 생성형 인공지능 (GAI)

1. Establishes a broad, protective definition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1.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방어적인 정의를 수립한다.

2. Establishes terms for use of “Synthetic Performers” created through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 A ‘Synthetic Performer’ is a digitally-created asset that: (1) is intended to create, and does create, the clear impression that the asset is a natural performer who is not recognizable as any identifiable natural performer; (2) is not voiced by a natural person; (3) is not a Digital Replica ; and (4) no employment arrangement for the motion picture exists with a natural performer in the role being portrayed by the asset.

(1) Parties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human performance in motion pictures and the potential impact on employment

(2) Notice to Union and an opportunity to bargain in good faith over appropriate consideration, if any, if a Synthetic Performer is used in place of a performer who would have been engaged under this Agreement in a human role.

(a) Does not apply to non-human characters

(b) Claims are arbitrable and limited to monetary damages

(3) Producer will bargain with and obtain Performer consent for use of GAI system to create a Synthetic Performer with a principal facial feature (i.e., eyes, nose, ears and/or mouth) that is recognizable as that of a specific natural performer through the use of such identified natural performer’s name and facial feature in the prompt to a GAI system.

(4) Agreement to meet regularly to discuss remuneration, if any, for use of work produced under CBA to train GAI system for creation of Synthetic Performers

2.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하여 생성된 "모조 연기자"의 사용 조건을 설정한다.

a) '모조 연기자'는 디지털로 생성된 애셋으로서 (1) 해당 애셋이 어떠한 특정 인간 연기자라도 인식되지 않는 인간 연기자라는 인상을 줄 목적으로

생성되고 실제로 명백히 그런 인상을 주며, (2)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고, (3) 디지털 복제본도 아니다. 또한 (4) 영화를 위해 애셋이 묘사한 역할의 인간 연기자와의 고용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1) 양측은 영화에서 인간 연기의 중요성과 고용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인정한다.

(2) 본 협약에 따르면 인간 역할에 참여했을 연기자를 대신해 모조 연기자를 사용하는 경우, 조합에 통지하고 적절한 대가에 대하여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교섭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a) 이 조건은 비인간 캐릭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중재 가능하며 금전적 손해로 제한된다.

(3) 제작자가 식별가능한 특정 인간 연기자의 이름과 얼굴 특징을 GAI 시스템에 지시해 특정 인간 연기자로 인식될 수 있는 주요 얼굴 특징(예: 눈, 코, 귀 또는 입)을 가진 모조 연기자를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연기자들과 교섭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모조 연기자를 생성할 목적으로 GAI 시스템을 학습시키기 위하여 단체협약에 따라 제작된 저작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보상(있는 경우)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적인 만남을 갖는 데 합의한다.

D. Semi-annual meetings between union and each Producer (subject to NDA) related to use and intended use of GAI in motion picture development and production, which may include discussion of efforts to ensure that use(s) of GAI mitigate against biases.

D. 영화를 발전시키거나 제작할 때 GAI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계획하는 것과 관련해 조합과 각각의 제작사 간에 (비밀유지약정에 따라) 반기별로 협의를 갖고, 여기에는 GAI 사용이 편향성을 완화한다는 확신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수 있다.

E. Digital Replication and Alteration of Background Actors

1. Digital Replication and Alteration

a) Applies to creation, use, or alteration of background actor's digital replica

b) A 'Background Actor Digital Replica' of a background actor is a replica of the voice or likeness of the background actor which is created using digital technology with the background actor's physical participation and is for the purpose of depicting the background actor in a scene in which the background actor did not actually appear

(1) Does not apply to 'tiling' of background actors

(2) Does not expand or contract any existing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Codified Basic Agreement and Television Agreement

(3) Does not override Schedule X, Part I, Section 17(e) or Schedule X, Part II, Section 17.E., as applicable (regarding use of digital technology to double a background actor)

c) Creation of Background Actor Digital Replicas

(1) 48-hour advance notice prior to services for creation

(2) Consent required:

(a) must be clear and conspicuous

(b) may be obtained through an endorsement or statement in the employment paperwork or voucher that is separately signed or initialed by the background actor or in a separate writing that is signed by the background actor

(c) Time spent is work time when on the same day the background actor performs other work for the Producer. Producer will endeavor to schedule on a day when the background actor is also working for the Producer under this Agreement

(d) Compensation

(i) One (1) day pay if not otherwise working

(ii) No additional payment if Producer is paying for other services, a travel allowance, an allowance for a day not worked on an overnight location or a canceled call (if paid less than one day, will receive amount equal to one day)

E. 엑스트라(단역배우)의 디지털 복제 및 변경

1. 디지털 복제 및 변경

a) 엑스트라의 디지털 복제본 생성, 사용 또는 변경에 적용된다.

b) ‘엑스트라 디지털 복제본’은 엑스트라의 목소리나 외모를 복제한 것으로서 엑스트라가 실제로 참여하고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생성되고 엑스트라가 실제로 등장하지 않는 장면에서 엑스트라를 묘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복제본을 말한다.

(1) 엑스트라의 ‘타일링(영상의 작은 단위인 ‘타일’에 기반하는 영상 제작 기법의 하나 /역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성문화된 <기본협약 및 텔레비전협약>에 따른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3) (엑스트라를 두 배로 늘리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적용 가능하다면, 별표 X의 1장 17(e)절 또는 별표 X 2장 17.E.절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c) 엑스트라의 디지털 복제본 제작

(1) 제작 업무 48시간 전에 사전 통지한다.

(2) 다음과 같이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a) 분명하고 명시적이어야 한다.

(b) 엑스트라 개개인의 서명이나 이름 약자(약식 서명)가 포함된 고용계약서나 바우처 또는 엑스트라 별로 서명해 작성한 서면에 배서하거나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c) 소요되는 시간은 같은 날 엑스트라가 제작사를 위한 다른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노동시간에 포함한다. 제작사는 엑스트라가 본 협약에 따라 제작사를 위해 작업하는 날에 일정을 잡도록 노력한다.

(d) 보상

(i) 같은 날 다른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1일 급여를 지급한다.

(ii) 제작사가 다른 용역, 출장비, 또는 야간 로케이션에서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수당 또는 취소된 호출에 대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 지급하지 않는다(하루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하루분과 동일한 액수로 맞춰서 지급).

2. Use of a Background Actor Digital Replica

a) Use in the Motion Picture for Which the Background Actor Was Employed

(1) Consent required unless the photography or sound track remains substantially as scripted, performed and/or recorded

(2) Must include a reasonably specific description of the intended use

(3) Consent must be clear and conspicuous and may be obtained through an endorsement or statement in the background actor's employment paperwork or voucher that is separately signed or

initialed by the background actor or in a separate writing that is signed by the background actor

(4) Continues after death unless explicitly limited otherwise

(a) If background actor is deceased, may be obtained from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deceased performer's exclusive rights as determined by applicable law or the union if representative can't be found

(5) Use in a principal capacity requires payment for the number of production days that the Producer determines the background actor would have been required to work had the background actor been adjusted under Section 26 of Schedule A and performed those scene(s) in person.

(a) Producer will make a good faith effort to estimate the number of production days utilizing objective criteria

(b) If Digital Replica remains in the picture in a principal capacity, residuals payable in same manner as upgrade under Section 26

(c) Compensation shall be treated as wages for all purposes

2. 엑스트라 디지털 복제본 사용

a) 엑스트라가 출연한 영화에서 사용하는 경우

(1) 촬영본 또는 사운드트랙이 대본, 출연 및 녹화 상태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 한 동의가 필요하다.

(2) 사용 목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동의는 분명하고 명시적이어야 하며, 엑스트라 개인의 서명이나 이름의 약자(약식 서명)가 포함된 고용계약서나 바우처 또는 엑스트라 별로 따로따로 서명해 작성한 서면에 배서하거나 진술하는 방식으로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4) 명시적으로 달리 제한하지 않는 한 사망 후에도 효력이 지속된다.

(a) 엑스트라가 사망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망한 연기자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권한을 보유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조합이 동의를 행사할 수 있다.

(5) 주요 역할에 사용하려면 엑스트라가 별표 A의 26절에 따라 조정되어 해당 장면을 직접 연기했다면 소요되었을 것으로 제작자가 판단하는 제작일수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a) 제작자는 제작일수를 추정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활용하여 신의성실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b) 디지털 복제본이 주요 배역으로 영상에 남아있는 경우, 26절에 따른 업그레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상영료를 지급해야 한다.

(c) 보상은 모든 목적에서 임금으로 취급된다.

b) Use Other Than in the Motion Picture for Which the Background Actor Was Employed

(1) Consent and separate bargaining

(a) Consent must be clear and conspicuous

(b) Must include a reasonably specific description of the intended use

(c) At time of use, not initial employment

(d) Continues after death unless explicitly limited otherwise

(e) If background actor is deceased, may be obtained from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deceased performer or union if representative cannot be found

(2) Compensation

(a) Background actor daily minimum is minimum

(b) Use in a field or medium covered by a SAG-AFTR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subject to bargaining at no less than the minimum wages and residuals in that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3) Will not be used in lieu of hiring background actors necessary to fulfill the applicable coverage maximums

(4) Will not use background actor's digital replica to circumvent the engagement of that background actor

b) 엑스트라가 출연한 영화 외의 사용

(1) 동의 및 별도 교섭

- (a) 동의는 분명하고 명시적이어야 한다.
- (b) 사용 목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c) 최초 고용 시점이 아닌 사용 시점에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d) 명시적으로 달리 제한하지 않는 한 동의의 효력은 사망 후에도 지속된다.
- (e) 배경 배우가 사망했는데 동의가 필요한 경우, 사망한 배우에 대한 권한을 보유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조합이 동의를 행사할 수 있다.

(2) 보상

- (a) 엑스트라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 (b) 최저 임금 및 재상영료 이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배우조합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현장 또는 매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 (3) 엑스트라를 고용해 적용 가능한 보상 최대치를 채우지 않고 디지털 복제본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4) 엑스트라 디지털 복제본을 해당 엑스트라의 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Digital Alteration

- a) Consent required to digitally alter the background actor's appearance in photography or sound track previously recorded
- b) Except when the photography or sound track remains substantially as scripted, performed and/or recorded.
- c) Consent must be clear and conspicuous and include a reasonably specific description of the intended alterations
- d) Consent may be obtained through an endorsement or statement in the background actor's employment paperwork or voucher that is separately signed or initialed by the background actor or in a separate writing that is signed by the background actor.
- e) Continues after death unless explicitly limited otherwise

(1) If performer is deceased, may be obtained from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deceased background actor or union if representative cannot be found

f) If lip or facial movements are digitally altered to make it appear that the background actor is speaking line(s) and dialogue, upgrade required pursuant to Section 26 of Schedule A

g) No consent is required to perform post-production alterations, editing, arranging, rearranging, revising or manipulating of photography and/or sound track for purposes of cosmetics, wardrobe, noise reduction, timing or speed, continuity, pitch or tone, clarity, addition of visual/sound effects or filters, standards and practices, ratings, an adjustment in dialogue or narration or other similar purposes, or under any circumstance when dubbing or use of a double is permitted under the Codified Basic Agreement or Television Agreement.

h) Claims subject to arbitration- Remedies limited to monetary damages

3. 디지털 변경

a) 이전에 녹화한 촬영본 또는 사운드 트랙에서 엑스트라의 모습을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b) 촬영본 또는 사운드 트랙이 대본, 연기 및 녹화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 동의는 분명하고 명시적이어야 하며, 변경 목적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d) 동의는 엑스트라 각각의 서명 또는 이름 약자(약식 서명)가 포함된 고용계약서나 바우처 또는 엑스트라 별로 따로따로 서명해 작성한 서면에 배서 또는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e) 명시적으로 달리 제한하지 않는 한 사망 후에도 효력이 지속된다.

(1) 배우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엑스트라에 대해 권한을 보유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조합이 동의를 행사할 수 있다.

f) 엑스트라가 대사를 말하거나 및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입술 또는 얼굴 움직임을 디지털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별표 A 26절에 따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g) 화장, 의상, 소음 감소, 시의성 또는 속도, 연속성, 음색이나 어조, 선명도, 시각/음향 효과 또는 필터 추가, 표준 및 관행, 등급, 대화 또는 내레이션의 조정, 기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또는 성문화된 <기본협약 및 텔레비전협약>에 따라 더빙 또는 대역 사용이 허용되는 모든 상황에서

촬영본 및 사운드 트랙의 후작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변경, 편집, 배열, 재배열, 수정 또는 조작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h) 이의 제기는 중재에 회부되고, 구제 조치는 금전적 손해로 제한된다.

(끝)